

## 총 무 처

국무총리지시 제 23 호

( 720-4335 )

1982.10.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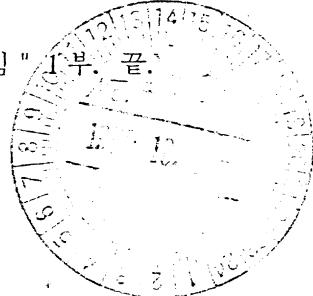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"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" 시달

1.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고 애국애족하는 국민정신을 더욱 함양하기 위하여, 각종 공식행사 및 회의 개최시에 적용할 "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"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랍니다.

2. 본 지침은 산하 공공기관(단체포함) 및 민간단체에도 파급 실시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"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" 1부 끝.

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가, 나, 다

##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

### 1. 기본방침

- 가.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므로 “국기에 대한 의례”는 바로 “국가와 민족에 대한 맹세”라는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정중한 마음가짐과 축연 한 자세로 거행한다.
- 나. 애국가는 애국·애족정신의 표현이므로 엄숙하게 제창(연주)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더욱 고양하도록 한다.
- 다. 각종 공식행사나 회의 개최시에는 “국기에 대한 의례”와 “애국가 제창(연주) 절차”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 한다.

### 2. 적용대상

- 가. 각종 정부의식 및 공식행사
- 나. 국무회의·차관회의등 각종 회의
- 다.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기관 내부회의 및 행사  
(시·종무식, 다수인이 참석하는 간부회의, 포상식, 체육대회)
- 라. 국기의 게양식 및 강하식

### 3. 거행방법과 절차

#### 가. 각종 정부의식 및 공식행사

##### (1) 국기에 대한 의례

국민의식 절차중 제일 먼저 “국기에 대한 경례”를 하여야 하며, 이때 “국기에 대한 맹세”를 병행하여 실시 (녹음설비의 이용 가능) 토록함.

##### (2) 애국가

“국기에 대한 의례” 다음 절차로 애국가를 제창( 참석자 전원 또는 합창단 ) 함.

#### 나. 약식행사

기공식 · 준공식 등 약식행사나 행사장의 상황 ·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애국가 제창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애국가 연주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동시에 거행할 수 되 녹음 설비의 이용이 가능함.

#### 다. 국무회의, 차관회의등 각종 회의

회의의 성격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“가” 호 또는 “나” 호에 준하여 거행한다.

#### 라. 기관 내부회의 및 행사

다수인원이 참여하는 기관 내부회의나 행사중

- (1) 시·종무식, 체육대회등에 있어서는 "가"호에 의하고
- (2) 다수인이 참석하는 간부회의, 포상식,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는 "나"호에 의한다.
- (3) 각종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있어서 "국기에 대한 맹세"를 교육 목적으로 선창·수창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.

#### 4. 범국민적 파급 시행

가. 본 지침이 산하공공기관(단체포함) 및 민간단체등에 파급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

나.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등을 통하여 범국민적으로 확산 실시되도록 유도할 것.